

PFL 적용 대상 예외 근로자 확인서

고용서비스부(Department of Employment Services, DOES), 유급 가족 휴가부(Office of Paid Family Leave, OPFL) - 세무과 귀중

본인, _____ [근로자 이름](은)는 이로써 본인의 고용주, _____ [고용주 이름](이)가, 이 날짜 _____ [날짜]에 본인에게 컬럼비아 특별구의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 PFL)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에서 본인의 임금을 DOES 에 다음 분기 _____ [해당 분기의 연도 및 월 (예. 2019 년 4 월~6 월)]에 예외 신청하였음을 알렸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표시한 항목에 동의합니다 [해당하는 항목 옆에 이니셜을 기재하십시오].

_____ 본인이 이 분기에 컬럼비아 특별구 밖에서 수행한 업무는 다른 관할구역에 임시로 재배치한 것이 **아니며** 근무지 배정 이후 컬럼비아 특별구 내의 정기적이고 관습적인 위치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_____ 본인이 이 분기에 컬럼비아 특별구 밖에서 수행한 업무는 과도기적이지 **않으며** 컬럼비아 특별구 밖에서 보낸 업무 시간은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동하는 성격의 근무가 아닙니다.

_____ 본인이 이 분기에 컬럼비아 특별구 밖에서 수행한 업무의 성격은 일시적이지 **않으며**, 컬럼비아 특별구 밖에서 수행한 업무는 필수적이었고 다른 관할구역에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_____ 본인이 이 분기에 컬럼비아 특별구 밖에서 수행한 업무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며**, 본인의 업무는 컬럼비아 특별구 밖에서 여러 다른 장소에서 특정한 중심점이 되는 장소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_____ 본인은 해당 분기에 본인 업무 시간의 오십 퍼센트(50%) 이상의 시간을 컬럼비아 특별구 외의 다른 단일 관할구역에서 근무했습니다.

위 다섯(5) 진술 옆에 **모두** 이니셜을 기재하였으므로, 본인의 고용주는 적용 대상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해야 하는 PFL 프로그램에 이번 분기에는 본인을 대신하여 DOES 에 납부하지 **않을 것**을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본인의 고용주가 이번 분기에 본인을 대신하여 PFL 기여분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므로, 본인의 고용주가 한 신청이 DOES 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분기에 본인이 받은 임금은 향후 본인이 PFL 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합산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변경되거나 컬럼비아 특별구의 업무로 복귀하여 다시 본인이 PFL 적용 대상이 된다면, 본인의 고용주는 본인을 대신하여 PFL 기여분을 납부해야 하며, 본인의 임금은 향후 PFL 혜택에 합산될 것을 이해합니다.

이로써 아래에 서명합니다.

[근로자 서명]

[날짜]